

# 「KDBpension 정기예금」 특약

# 제1조 약관의 적용

「KDBpension 정기예금」 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.)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, 「거치식예금 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# 제1조의2 용어의 정의

- ① 이 예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1. "사용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.
  - 2. "가입자"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.
  - 3. "퇴직연금사업자"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제2조 제1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.
  - 4. "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제도)"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제2조 제15호에 따른 "사전지정운용제도" 로써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  - 5. "적립금"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### 제2조 가입 자격

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3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.

# 제4조 예금의 종류

-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.
  - 1. 일반형
    -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을 만기시까지 적용
  - 2. 사전지정운용형(디폴트옵션형)
    -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제21조의3에 따라 시행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제도)의 정기예금으로 예금 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만기시까지 적용

#### 제5조 계약기간

- ① 일반형 예금의 계약기간은 가입시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 또는 5년 중 택일하여야 하며, 가입 후에는 계약기간을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(이하 "만기일지정식"이라 합니다.), 가입 후에는 계약기간을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③ 사전지정운용형(디폴트옵션형) 예금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.



# 제6조 만기처리방법

-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
  - 1.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,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.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,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. 만기일지정식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재예치기간을 1년인 계약으로 정합니다. 다만,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수 있습니다.
  -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하지 않으며,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.
  - 3. 은행은 고객에게 재예치 됨을 설명하고, 고객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고객이 신청한 방법(SMS 또는 이메일)으로 통지합니다.
-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,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
  - 1. 이 예금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며, 자동재예치가 불가합니다.
  - 2. 사전지정운용형(디폴트옵션형)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편 입된 경우 고객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재예치하며 제1항 제3호와 같이 처리합니다.

# 제6조의2 재예치 기준일

이 예금의 만기일을 재예치일로 하되,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만기일의 다음 영업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.

# 제7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

- ① 이 예금의 이율은 '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'(이하 '예금일'이라 합니다.)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만기일지정식의 경우 계약기간 내 포함되는 최장기 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
- ② 이 예금을 만기일(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의 다음 영업일)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# 제8조 중도해지이자

- 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형(디폴트옵션형)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중도해지사유로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한 때에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기간별로 예금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다음의 이율(단, 제3항 제7호 및 제13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별 만기 이율)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  - 1.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: 해당 계약기간별 만기 이율
  - 2. 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계약
    - 가. 1년 미만 예치시 : 이 예금의 1년 만기 이율
    - 나. 1년 이상 2년 미만 예치시 : 이 예금의 1년 만기 이율



- 다.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시 : 이 예금의 2년 만기 이율
- 라. 3년 이상 예치시 : 이 예금의 3년 만기 이율
- ④ 제2항의 중도해지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- 1.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
  - 2. 연금지급을 위한 경우
  - 3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
  - 4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 - 5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
  - 6.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탁업무 사임
  - 7.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, 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
  - 8.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 - 9. 가입자의 사망
  - 10. 가입자의 해외이주(단,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한함)
  - 11.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(단,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한함)
  - 12. 동일 자산관리 기관 내 계약 이전 및 제도 전환
  - 13.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

# 제8조의2 만기후 이율

이 예금을 만기일 후에 지급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다음 각 호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. 다만, 해당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.

1. 만기후 1년 이내 : '일반정기예금(1년)' 기본이율의 1/2

2. 만기후 1년 초과 : 보통예금 이율

# 제9조 분할인출

- ① 이 예금은 만기인출을 포함하여 **3**회까지 분할인출 할 수 있습니다. 단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인출을 포함하여 **3**회까지 분할인출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분할인출 횟수에서 제외하며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분할인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  - 1.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급여 지급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
  - 2. 연금지급을 위한 경우
  - 3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
  - 4.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, 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
  - 5. 동일 자산관리 기관 내 계약이전 및 제도 전환을 하는 경우
  - 6.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
-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분할인출 하는 경우에는 분할인출 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분할인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# 제10조 제한사항

# ( 한국산업은행

이 예금은 담보제공, 질권설정 및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.

# 제11조 통장발급

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합니다.

#### 부칙

(시행일) 이 특약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.

#### 부칙(1)

(시행일) 이 특약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.

#### 부칙(2)

(시행일 등) 이 특약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 다만, 제5조는 기존고객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.

#### 부칙(3)

(시행일 등) 이 특약은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#### 부칙(4)

(시행일 등) 이 특약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#### 부칙(5)

(시행일 등) 이 특약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#### 부칙(6)

(시행일 등) 이 특약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#### 부칙(7)

(시행일) 이 특약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이 예금의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. 단, 제6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입 고객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만기도래하는 예금은 자동재예치되나 그 이후는 자동재예치가 불가합니다.

#### 부칙(8)

(시행일 등) 이 특약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 다만,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전지정운용형(디폴트옵션형) 예금이 시행일 이후 자동재예치되는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.